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비엔케이투자증권

2. 조치일 : 2026. 9. 17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사항 2건
임 원	해당사항 없음
직 원 등	해당사항 없음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채권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 개선

㈜비엔케이투자증권 준법감시부는 내규에 따라 채무증권 거래 시 거래 가격의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있으나

운용북은 무위험채권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모니터링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여, 운용북의 일반 회사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.

<조치할 사항>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채권 거래가격 적정성 점검대상에 운용북을 포함하는 등 이상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(2)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필요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내규 「내부통제기준」에 따라 업무의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,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·운영하여야 하나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동일 업무를 다수 본부·부서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, 한 본부 · 부서가 본질적 업무 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<조치할 사항>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각 부서의 유사업무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개선사항

(1) 채권 거래기록 관리 불철저

투자매매업자 등은 채권 장외거래 호가정보를 서면, 전산자료 등 형태로 3년이상 기록 · 유지해야 함에도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거래체결과정에서 휴대폰, 외부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의 후 K-Bond에는 체결내역만을 기재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회사가 인정하는 통신장비, K-Bond 등을 사용하여 매매 물건탐색, 가격협의과정 등 호가정보를 기록 ·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
< 관련법규 >
1.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9조

(2) 이해상충 관리 강화 필요

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고,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에도,

㈜비엔케이투자증권 준법감시부는 기업금융부서의 상장사 메자닌 투자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,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파악되어 내규 등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,

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, 기존 관리방안을 별도 검토문서 없이 삭제·변경하는 등 이해상충 관리 업무가 미흡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㈜비엔케이투자증권은 내규 등에서 정한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이해상충 관련 검토 시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관련법규 >

1.「자본시장법」 제44조